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## 제목 2015년 5월 결손(불납결손) 결정결의서

1. 무재산 및 행불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결손결정 결의코자 하며,

2. 불납결손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,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6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은 즉시 결손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손처분일 : 2015.5.1.~ 5. 31

나. 결손 건수 및 금액 : 1,173건/금932,273,400원

(금구억삼천이백이십칠만삼천사백원)

- 불임
1. 결손결정결의서 1부.
  2. 결손(불납)집계표 1부.
  2. 결손(불납)결정결의내역(2015.5.1.~5.31) 1부. 끝.

주무관	<b>서복순</b>	38체납기동대TF 팀장	<b>김희동</b>	세무관리과장	<b>신오식</b>	기획경제국장	전결 06/16 <b>문경수</b>
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3441 ( ) 접수 ( )  
 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  
 전화 02-3423-5624 /전송 02-3423-8832 / nicebokja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5,6)